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. 5. 31 선고 2022가단114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

담당변호사 김동호

변 론 종 결 2023. 4. 5.

판 결 선 고 2023. 5. 31.

## 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  
가. D와 피고 사이에 2022. 3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 
나.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- 1) 주식회사 E은 2016. 3. 22. D와 대출금액 1,850만 원, 대출기간 만료일 2021. 3. 5.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(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‘이 사건 대출금’이라 한다)하였다.
- 2) 주식회사 E은 2017. 2. 21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- 3)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599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10. 20. ‘D는 원고에게 23,866,526원 및 그중 17,643,544원에 대하여 2017. 10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#### 나. 피고의 상속등기 등

- 1) 망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이 2022. 3. 17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, 자녀들인 D, G, H, I가 있다.
- 2)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. 3. 23. 1)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(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‘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’이라 한다), 그에 따라 피고는 2022. 3. 23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17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#### 다. D의 재산상태

D는 위 제나의 2)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2/11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

있었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외에도 기업은행, J은행, K 등에 원금 기준 632,602,000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이 법원의 L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이 있고,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22. 3. 23.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피보전채권이 된다.

### 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2) 위 기초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, D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

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로서는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D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망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, 이러한 D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와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적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[한편 피고는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던 주택인데 2020년경 부속 건물을 새로 증축할 당시 D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, D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모 및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금전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인식 없이 공동상속인인 피고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여 함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,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. 여기서 ‘안다’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.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,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,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, 당시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였는바,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D는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]

#### 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
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현서

## 부동산 목록

1. 경상북도 군위군 M 대 843㎡

2. 경상북도 군위군 N 대 658㎡

3. 경상북도 군위군 N, O

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군위군 P

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81㎡

부속건물

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 및 금속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9.64㎡

4. 경상북도 군위군 Q 답 1382㎡ 끝.

1)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서두에는 '2022년 3월 17.일 ..(중략)..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'고 기재되어 있으나, 말미에 작성날짜가 '2022년 3월 23.일'로 기재되어 있다.